

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계속비사용승인안

(의안번호 제724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1. 26 고 성 군 수
나. 회부일자 : 2001. 11. 28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1. 12. 11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○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공룡전시관 건립 및 그 부대시설 공사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임과 같이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사업명 :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
- 사업내용
 - 공룡전시관 건립 : 3,441.77m²(1,041.1평/1동)
 - 부대시설공사 : 진입로, 조경, 기타 등
- 사업기간 : 2001. 12. ~ 2003. 12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음.

- 따라서,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 까지 시행하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반시설, 공룡전시관 및 그 부대시설공사로 예정총공사비 10,678백만원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 계획사업이므로 본 계획비사용승인안 제출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,
- 사업의 계속 투자의 필요성과 공사량의 분할계약 등으로 조속히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인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부지매입이 16%로 미진함에도 오늘 공사 입찰공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
- 답 : 토지소유자들의 사용 승낙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봄.
- 문 : 토지소유자들의 토지 외 지상의 수목보상 관련 민원 제기에 따른 해결방안은
- 답 :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상 지상물을 보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감정평가 협의회 및 건설교통부에 그 사항을 질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되는 대로 가부를 정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음.
- 문 : 조속히 서둘러 빨리 할 수 있음에도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이유는
- 답 : 절차진행에 따른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고 투·용자 심사가 선행되어야 실시설계가 가능하므로 다소 지연됨.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목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음.

6. 토 른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